

소비자, 아동학과/소비자학과 졸업사정 기준 안내

□ 졸업신청절차

- 최소 졸업일 30일전까지 졸업인증 통합정보(Web)본인신청 → 졸업가능여부 본인 확인후 “졸업신청서” 접수기간내 학교사무실 제출
- 신청서 제출이후 진행현황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≡ 통합정보시스템 > 학사행정 > 졸업 > 학부졸업대상자관리 > 졸업사정진행현황(학생)

□ 졸업사정 심사기준(학칙 제62조)

전공이수 졸업요건						
	학번	기준	전공과목		졸업학점	졸업논문
			전공핵심(전공필수)	전공심화(전공선택)		
소비자·아동학과	~2007학번 이전	51학점 이상		심화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	140학점 이상	졸업시험* (7학기 이상 이수자) 각 과목별 시험총점의 60%이상 득점자
	2008학번					
	2009학번					
	2010학번	60학점 이상	▶ 핵심영역에서 “연구방법론” 포함 15학점 이상 필수이수	심화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	135학점 이상	
	2011학번					
	2010~2015학번					
2016학번	60학점 이상	▶ 핵심영역에서 “연구방법론” 포함 21학점 이상 필수이수	심화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	130학점 이상		
2017~2018학번						
소비자학과	2019~2022학번	60학점 이상	▶ 핵심영역에서 “소비자정량조사” 포함 21학점 이상 필수이수	심화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	130학점 이상	
	2023학번~					

* **졸업시험 신청 대상** : 4학년 2학기 재학 중 7학기 이수자는 해당 학기에 꼭 시험을 치루어야 함

* **[소비자학과(19학번~)]** 2022.03.28.학과회의 결정 23~2 졸업시험부터 기준변경 적용

변경후 (2023년 11월 시험부터~) - 필수과목 (소비자학과 전공핵심(전공필수) 교과목 10과목 중 4과목 선택)

변경전 (~2023년 5월 시험까지) - 필수과목 (소비자학과 전공핵심(전공필수) 교과목 13과목 중 4과목 선택)

[소비자·아동학과(~18학번)]

- 필수과목 2과목(소비자와시장,아동과가족), 선택과목 2과목(소비자선택:가계재무설계,소비자의사결정 / 아동선택:보육학개론,보육과정)

* **졸업시험 일정** : 1학기 5월 2째주 금요일 10시 ~, 2학기 11월 2째주 금요일 10시 ~

교양이수 졸업요건						
	학번	기준	교양과목		졸업학점	졸업논문
			교양필수(기초교양)	INU핵심교양 및 교양선택(핵심교양 및 심화교양)		
소비자·아동학과	~2007학번 이전	25학점 이상		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	140학점 이상	졸업시험* (7학기 이상 이수자) 각 과목별 시험총점의 60%이상 득점자
	2008학번					
	2009학번					
	2010학번	25~55학점	▶ 6학점 이상 - 국어 : 1과목 - 영어 : 4학점 이상	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		
	2011학번					
	2010~2015학번					
2016학번	30~55학점	▶ 6학점 이상 - 국어 : 2학점 - 영어 : 2학점 이상 (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) - 회화 : 2학점	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			
2017~2018학번						
소비자학과	2019~2023학번	30~55학점	▶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 6학점 이상 - 국어 : 2학점 - 영어 : 2학점 이상 (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) - 회화 : 2학점	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학점 범위내에서 이수	130학점 이상	
	2023학번 이후					

▶ **핵심교양 6개영역*** 중 영역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(2022학년도까지 이수한 INU핵심교양 과목 포함 3과목 이상 이수)

▶ **심화교양 5개영역****에서 자유롭게 이수

▶ **핵심교양 6개영역*** 중 영역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

▶ **심화교양 5개영역****에서 자유롭게 이수

□ 기타

- 기타취득학점(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+OCU취득학점)+선이수제취득학점+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**졸업학점의 1/2범위 내에서만 인정**
- 온라인 교육 중 순수형 온라인 교육(e-learning및OCU)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**(2020학년도 신입생부터~) 전체학기 총27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**
(~2019학년도 신입생까지) 전체학기 총48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

▣ 부 · 특수전공 졸업사정기준

학번	부전공	특수전공	
2005년 이후~	21학점 이상 (전공핵심 영역 9학점 이상) *중복인정학점 9학점 이내	42학점 이상 (주전공 전공핵심 이수기준 충족) *중복인정학점 12학점 이내	졸업논문 - 졸업논문, 실기발표, 실험실습(D등급이상) - 졸업종합시험(총점의 60%이상)

* 교과목 이수 기준 및 졸업논문(졸업종합시험)은 주전공(소비자학과/소비자 · 아동학과)의 졸업사정 기준을 따름

* 교과목의 경우 이수할 당시의 이수구분(전공핵심(필수), 전공심화(선택))으로 졸업사정 인정

▣ 졸업인증(영어) 졸업사정기준

- 인증대상 :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,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,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
(단,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,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)

- 인증방법 :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 기간내(졸업 30일전까지 신청) 인천대학교 통합정보(Web) 본인신청

1) 공인영어성적기준 점수 이상 취득(2022학년도 3월~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개정)

-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 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로 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

구분 만점	TOEIC 990점	TOEFL(iBT) 120점	New TEPS 600점	IELTS 9	TOEIC SPEAKING 200	TOEIC WRITING 200	OPic AD
2010학번 이후~	700	82	264	6.5	130	140	IM
~2009학번 이전	600	68	227	5.5	110	120	IL

2) 영어졸업 대체수업 이수

-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 · 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2과목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

3)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

구분	자격요건	제출서류
재직자	직장건강보험 가입자	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	의료급여 수급권자	재직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고용·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
	해외취업자(신설)	고용계약서, 비자사본
1인 창(사)업자	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	종합소득세 신고서
프리랜서		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
농림어업 종사자	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	농업인 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어업인 확인서,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
장애학생(신설)	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	장애인 증명서

*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

▣ 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취득

- 인증대상 : 외국인 유학생(외국인 전형 중 한국국적자 제외)

- 인증방법 : 기간내(졸업 30일전까지 신청) 인천대학교 통합정보(Web) 본인신청

※ 한국어능력시험(TOPIK)

- 4급 미만 취득한 후 입학(신 · 편입생)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

- 4급 이상 취득한 후 입학(신 · 편입생)한 경우에는 성적의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

▣ 졸업유예제도(학칙 제 66조의2 제1,2항) -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졸업 연기

- 대상 : 졸업학점과 졸업요건(영어인증, 졸업논문 등)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(재학생만 가능, 수료생 불가)

- 메뉴 : 포털>통합정보시스템>학사행정>졸업>졸업유예관리>졸업유예신청

- 주의사항 :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(15만원)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, 1차 등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(졸업) 불가 (신중하게 결정하세요!!), 재학 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